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법 인 **대 한 병 원 협 회**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철저 안내

1.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-2481(2015.7.13)

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,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<붙임2>하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(전자문서 포함)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4. 또한, 같은 법 제83조제1호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기록 작성하고 보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1. 예방접종 기록 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사용법

2.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57호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회원병원장

대리 최명희 팀장 정교숙 국장 방성민 사무총장 김현수

시행 : 기획정책 제 2015-330 (2015.07.16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13 전송 02-705-921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cmh@kha.or.kr